

「펀드사랑 정기예금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“펀드사랑 정기예금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거치식예금 약관』을 적용한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한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한다.

제4조 가입기간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 월단위로 자유롭게 지정 가능하다.

제5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3백만원 이상으로 한다.

제6조 원리금 지급

- ① 이 예금의 원금과 이자는 계약일 당시 고시한 이율로 셈하여 매월 동일한 원리금이 지급되도록 산정하여 지급한다.
-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,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다.
- ③ 예금의 만기일 이후 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.

제7조 이자계산

이 예금의 이자계산은 월단위로 한다

제8조 일부해지

이 예금은 일부해지를 할 수 없다.

제9조 계약기간변경

이 예금은 최초 약정한 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.

제10조 세금우대 및 생계형

이 예금의 세금우대 및 생계형 가입은 불가하다.

제11조 예금담보대출

이 예금의 예금담보대출은 불가하다.

제12조 부가서비스

이 예금은 고객이 신청 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이외에 지정한 수익증권계좌(1개)로 매월 원리금이 자동이체 되도록 지정 할 수 있다.

<부칙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